

의안번호	제 276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1월 일 (제 306 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연월일	2012년 1월 3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안
번호

제 276 호

제출연월일 : 2012년 1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제천시에서 제천시 청풍면 일원에 청풍토립 황토체험 등 「청풍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가 편입되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

(단위 : m², 천원)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제천교육지원청	토지	청풍초 양평폐교 토지 처분	9,344	560,640
	건물	청풍초 양평폐교 건물 처분	577	81,555
합계		(2건)	9,921	642,195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붙임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취득합계	5	43,441.08	49,336,555				5	43,441.08	49,336,555	
	계	토지	2	27,724.00	1,620,000				2	27,724.00	1,620,000
		건물	3	15,717.08	47,716,555				3	15,717.08	47,716,555
		기타									
	1. 매입	토지	2	27,724.00	1,620,000				2	27,724.00	1,620,000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3	15,717.08	47,716,555				3	15,717.08	47,716,555	
	기타										
처 분	처분합계				2	9,921	642,195	2	9,921	642,195	
	계	토지				1	9,344	560,640	1	9,344	560,640
		건물				1	577	81,555	1	577	81,555
		기타									
	4. 매각	토지				1	9,344	560,640	1	9,344	560,640
		건물				1	577	81,555	1	577	81,555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2.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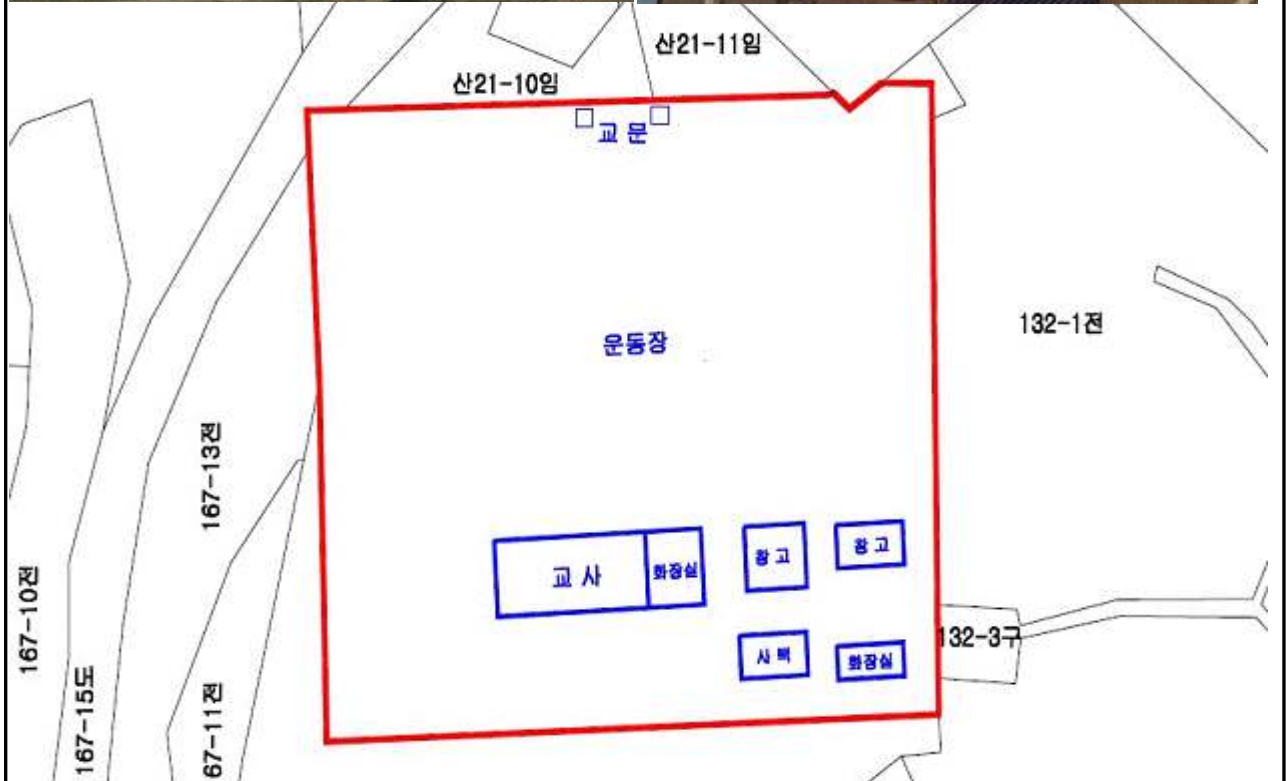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처 분 시 기	처분 사유	매 도 요구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²)					
청 풍 초 양평폐교	토지	제천시 청풍면	9,344	560,640	2012. 상반기	제천시에서 청풍지구 황토체험 등 「청풍 지구」 농어촌테마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매각 요구에 따라 처분	제천시	도면1
	건물	도곡리 132-4	577	81,555				
합 계 (2건)			9,921	642,195				

1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 현황

- 폐교일자 : 1995. 3. 1.
- 재산위치 :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132-4
- 재산현황
 - 토지 : 9,344m²
 - 건물 : 본관교사 외 5동 / 577m²
- 추정금액 : 642,195천원
- 현 용도 : 제천시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대부계약 해지

도면 1 :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 처분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건물명)	지목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처분사유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 처분	토지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132-4	학교용지	9,344	560,640	제천시에서 청풍지구 황토체험 등 「청풍 지구」 농어촌테마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매각 요구에 처분
	건물		교사	연와조	321	52,965	
			사택	연와조	86	14,190	
			창고	연와조	86	7,740	
			창고	시벽조	30	1,800	
			화장실	연와조	46	4,140	
			화장실	시벽조	8	720	
			소 계				
합 계					9,921	642,195	



관계법령 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